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285호, 2015. 5. 18. 공포, 2015. 11. 19. 시행) 개정에 따라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확인절차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7조의2)

4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 . 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7조의2(확인사건의 처리절차)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.

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“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
2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④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87조의2(확인사건의 처리절차)</p> <p>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법 제57조제2항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법 제57조제4항제2호의 “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 2.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<p>④ 제1항의 확인절차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⑤ 제1항의 확인절차 및 제2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	
연락처	(02) 3480 - 1771